

대전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7가단22329(본소), 2018가단10385(반소) 판결
[원상회복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115400(본소), 2019나115417(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7가단2232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피고(반소원고)2. 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 2019. 4. 17.

판결 선고 2019. 9. 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남 금산군 E 대 1,058㎡ 중,
가.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ㅎ,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 지상
건물, 같은 도면 표시 ㅎ, ㅁ, ㄴ', ㄱ', ㅎ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 지상 창고,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길이 2.8m의 벽돌담, ㅎ, ㅂ, ㅅ,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길이 12.8m의 벽돌담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 1 도면 표시 ㄱ, 6, ㄷ, ㄴ, 7,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6㎡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및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9,218,200원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 C에게 충남 금산군 E 대 1,058㎡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6, ㄷ, ㄴ, 7,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ㄴ) 부분 106㎡'에 관하여 2011. 8. 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금산군 E 대 1,058㎡의 소유 및 이용관계

1) 충남 금산군 E 대 1,058㎡(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의 형인 F가 197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70. 5. 11. 접수 제19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1. 8. 매매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18. 1. 8. 접수 제2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폭 3m 가량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F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인접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왔고, F가 위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그 이용 상태는 계속되어 왔다.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6, ㄷ, ㄴ, 7, 8, 9, 10, 11, 12,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ㄴ)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라고 한다)은 피고 C가 소유한 충남 금산군 G 대 321㎡(이하 '이 사건 피고 C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인접해 있고, 그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6, ㄷ, ㄴ, 7, 8, 9, 10, 11, 12,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 지상에는 피고 C 소유의 주택이, 같은 도면 표시 ㄷ, ㄴ,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 지상에는 피고 C 소유의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길이 2.8m 및 ㄷ, ㄴ,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길이 12.8m에는 피고 C 소유의 각 벽돌담이 설치되어 있다.

나. 충남 금산군 E 대 1,058㎡의 소유 및 이용관계

1) 피고 C는 1991. 8. 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피고 C 소유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1. 8. 5. 접수 제104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106.26㎡ 및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창고 24.96㎡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1. 12. 21. 제1744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이 사건 C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1. 8. 5. 무렵부터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점유해 오고 있다.

다. 피고 B의 주택 신축공사 및 피고들 사이의 합의

1) 피고 B는 2011년경 충남 금산군 H 지상에 블록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단독주택 118.66㎡ 등을 축조하였다(피고 B은 위 축조 이후인 2013. 5. 23.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위 축조 당시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 및 담장 등(이하 '이 사건 화장실 등'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진입로로 사용되던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대형 화물차량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피고 C에게 이 사건 화장실 등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B의 장모인 I 소유의 충남 금산군 J 전 321㎡² 및 K전 51㎡를 증여받고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작성한 후 이 사건 화장실 등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3, 4, 8, 9,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는 원고의 형인 F가 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소유자일 뿐인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1.8. 매매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18. 1. 8. 접수 제2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이행청구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이로써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데 충분한 것인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써 피고 C를 상대로 건물 등의 철거 및 토지 인도와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본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소 중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상당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장실 등을 철거하기 전 원고와 F에게 이를 철거하더라도 피고 B의 건물 신축공사 완료 후 원상태로 복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화장실 등 원상복구비 29,218,200원 상당의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화장실 등의 철거 후 원상태로 복구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그 철거에 동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이 사건 화장실 등 원상복구비 29,218,200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장실 등을 철거함에 있어 원고나 F에게 이를 원상태로 복구해 주기로 약속하거나, 또는 위와 같이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한 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들이 원상복구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가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에 관한 증거로 이 사건 화장실 등의 복구공사에 29,218,200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기재된 견적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화장실 등의 규모나 구조, 재질, 최초 설치 또는 축조된 후 철거 시까지의 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화장실 등을 철거 전 상태로 복구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29,218,200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장실 등을 새로 축조 또는 설치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장실 등의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위 29,218,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화장실 등 원상복구비 29,218,200원 상당의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상복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본소 중 피고 C에 대한 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중 피고 C에 대한 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점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점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alpha, \beta, \gamma, \delta, \epsilon, \pi, \theta, \iota$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 지상에 주택을, 같은 도면 표시 $\theta, \pi, \iota, \gamma, \delta$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 지상에 창고를, 같은 도면 표시 γ, ι, α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길이 2.8m 및 $\theta, \beta, \alpha, \circ$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길이 12.8m에 각 벽돌담을 축조한 채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주택 및 창고, 각 벽돌담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항변 및 반소 청구의 요지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점유 토지는 이 사건 피고 C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91. 8. 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11. 8.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토지 지상의 주택 등을 철거하거나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하여 2011. 8.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 C가 주장하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보건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등 참조),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점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피고 C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91. 8. 5.부터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 C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점유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이 사건 점유 토지에 주택 및 창고, 각 벽돌담을 축조한 채 이를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점유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당초 원고의 조모 L와 부친 M이 피고 C의 부친 N에게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사용대차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C의 점유는 타주점유일 뿐이어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3 및 갑 제10호증의 1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조모 L 및 부친 M이 피고 C의 부친 N과 사이에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관계에 있었다거나, 달리 피고 C가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한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원고의 조모 L와 부친 M이 피고 C의 부친 N에게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증여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피고 C에 대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해제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한 점유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가 아님은 명백한 이상,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해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한, 피고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1. 8. 5.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후인 2018. 1. 8.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C 주장의 취득시효 완성 시점인 2011. 8. 5. 당시 이 사건 점유 토지의 소유자였던 F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2011. 8. 5.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한 위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원고는 이미 이에 관한 진정한 소유자였는데, 원고가 2018. 1. 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공시가 이루어졌을 뿐인바,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시효제도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가 그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제3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제도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큰 것이므로, 법이 진정한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온당치 아니하므로 그 취득요건은 극히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나아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20년 점유시효취득자가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비록 악의라 하더라도 제3자의 등기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 제3자의 등기가 상속 등 포괄승계와 같이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그 전 등기명의자로부터 승계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그 전 등기명의자와 동일시해야 할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그 등기가 법률상 원인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95.5.9. 선고 94다22484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소유권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명의에도 변동이 있고, 명의신탁제도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될 뿐이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 있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 등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설령 피고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점유 토지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그 등기명의인으로서 원고의 형인 F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 이를 행사해 오던 중 피고 C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일인 2011. 8. 5. 이후인 2018.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대외적 소유관계와 대내적 소유관계가 일치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F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거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F로부터 승계하여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F로부터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그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거나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니,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취득시효제도로써 보호할 가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고 C의 항변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강균

별지